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가단357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2. 27.

판 결 선 고 2024. 3. 26.

주 문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지상 대 287.5㎡ 중 4층 D호 대지 27.37/287.5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7. 접수 제664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본래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어 있었던 서울 강남구 C 지상 대 287.5㎡ 중 4층 D호 대지 27.37/28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남편인 E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20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사기로 승소 확정 판결을 편취하였고 결국 그와 같이 편취된 판결에 기해 당초 원고 소유였던 위 대지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7. 접수 제664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대지 지분의 현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할지라도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대하여 그 말소를 명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2070호 확정판결에 기해 말소되었는바, 위 판결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송사기로 인하여 편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의사진술이 간주되는 해당 판결의 존재나 기판력이 곧바로 물각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곧바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 등으로 소멸되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